

의안 번호	1006
----------	------

## 울산광역시중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연월일 : 2013. 7. 1.(월)
- 나. 제 출 자 : 권태호 의원 외 4명
- 다. 위원회회부 : 2013. 7. 2.(화)
- 라. 위원회심사 : 2013. 7. 22.(월)

### 2. 제정이유

도시의 경관향상 및 건축물 옥상의 녹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옥상 녹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적용범위(안 제1조 ~ 제3조)
- 나. 지원대상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제6조)
- 다.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라.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마.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### 4. 근거법규

「건축법」, 「주택법」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,  
「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」

#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옥상녹화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
-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